

● 제303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(의안번호 2829)

2021. 12. 17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조상호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번호 2829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안자 : 조상호 의원 외 9명 발의
- 나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15일
- 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20일

2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상위법인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지원사업 내용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,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제 1항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안의 취지

- 상위법인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지원사업 내용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,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되었음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-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음(안 제7조제1항).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지원 사업)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5.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<u>거주시설·주간활동·돌봄</u>	제7조(지원 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 <u>거주시설·돌봄</u> -----

지원 <신 설>	--
6. ~ 10. (생 략) ② (생 략)	5의2.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 간활동·방과 후 활동 지원 6. ~ 10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나. 개정안에 대한 검토

-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 사회·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‘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’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나,

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

- **사업목적** :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고,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 사회·경제적 활동 지원
- **예 산** : 2022년 기준, 5,000,000천원(국비 50%, 시비 50%)
- **지원대상** : 만 12이상 만 18세미만, 중고, 전공과 재학 중인 장애인 등록지적·자폐성 장애인
- **사업내용**
 - 지원방법 :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동제공인력 1인당 2~4명의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(방과후돌봄서비스 바우처 발급)
 - 지원시간 : 월 44시간(월~토,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
- 동 조례에서는 발달장애인 방과 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,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.

- 또한, 상위 법령인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과 후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('21.6월 개정) 하고 있어, 상위법과 상충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다.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: 원안동의

- 상위법령인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, 조례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3

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지원사업 내용에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제안되었으며,
-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문 의 처

류민국 입법조사관 (02-2180-8140)